

# 고덕신도시 아테라 A-63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청약 Home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고덕면 일원(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63BL)  
 ■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630세대(전용면적 74㎡A 180세대, 74㎡B 134세대, 84㎡A 156세대, 84㎡B 157세대, 84㎡C 3세대)

##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경기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국민주택 (공공분양)	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5.04.17. 이전부터 계속 거주)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25.10.17. 이전부터 계속 거주)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3년	적용	공공택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4.17(금)	2026.04.27(월)	2026.04.28(화)	2026.04.29(수)	2026.05.07(목)	2026.05.14(목) ~ 2026.05.23(토)	2026.06.28(일) ~ 2026.07.01(수)

## ■ '고덕신도시 아테라'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63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안내

- 사업주체 : 공공시행사-한국토지주택공사 / 민간사업자-금호건설(주), 우미건설(주), 신동아건설(주), (주)신흥디앤씨
- 시공업체 : 금호건설(주), 우미건설(주), 신동아건설(주), (주)신흥디앤씨

고덕신도시 아테라에서는 분양상담전환(1833-6301)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동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부적격 처리 혹은 불이익 부과)되며,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정책 변경(DTI, LTV, DSR 등)에 따른 금리인상, 중도금 대출 비율 축소 및 중도금 대출 불가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분양자 자격으로 중도금(총 분양대금의 60%)을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업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경우 대출이자 후불제 사업이며, 중도금 대출은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중도금 대출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하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합니다.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된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할 외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알려드립니다

- 중전 통장(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2026.04.16.)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이 각 공급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 및 배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7. 포함) 이후 중전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이 불가하며 추정대상에서 제외] 이 때,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저축 기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부터 납입실적을 인정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4.17.(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124이며, 공고문은 고덕신도시 아테라 홈페이지(<https://www.arteragd.co.kr>)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관람 안내
  - \* **건본주택 개관**은 2026.04.24.(금)이며, 공급안내문 등은 건본주택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건본주택 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산 510-97번지, 고덕신도시 아테라 건본주택
  - \* **건본주택 운영시간** : 2026.04.24.(금)부터 분양완료 시까지(10:00~17:00)
  - \* **건본주택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차가 불가할 수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덕신도시 아테라 건본주택은 단위세대 74B형, 84A형이 설치되었으며, 기타 사항은 고덕신도시 아테라 홈페이지(<https://www.arteragd.co.kr>) 및 공급안내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내 전시된 단위세대(건본세대, 모형 등)는 발코니 확장형 기준입니다.
- **당첨자발표일 이후 서류접수기간, 공급계약 체결일정 등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공급 대상자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이 가능합니다.**
- **청약 전 반드시 건본주택(홈페이지 포함) 내 실제 건립 세대 촬영 영상 및 타입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시고, 실물 건본 세대를 관람 하지 않고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것에 대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면적 등을 포함한 실거주면적은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고덕신도시 아테라 건본주택 및 홈페이지(<https://www.arteragd.co.kr>)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명을 말함)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할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인 1건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단,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 특별공급 확정대상자(당첨예정자)는 불가)는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의거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25조 및 제34조에 의거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11페이지)에 따라 지역별 물량을 배정하고 **공고일 현재 지역별 거주자 또는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봄)

- (1) 입주자모집공고일(26.04.17.) 현재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 (2) 입주자모집공고일(26.04.17.) 현재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 (3)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26.4.16.)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중인 경우 청약신청 가능(입국일은 해외체류기간에 포함)
- (4)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 (5) (1) 또는 (2)에 해당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 (6)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7)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의거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7.) 현재 경기도 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25.04.17.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2025.10.17.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20%를 공급(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전국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및 전국 거주)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전국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및 전국 거주)에게 공급합니다.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위와 같이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해당첨여부 등의 신청자격 검증대상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1순위자)	추첨공급
무주택여부, 중복청약, 해당첨여부 등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세대주여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신청자 본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과거 주택소유이력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세대구성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입주자저축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절거민 등 불필요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 이상) ※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 이상)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1순위자]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 이상) [2순위자] 신청자 본인(가입자)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 이상)	신청자본인 (가입자)
소득	해당 없음	(세대)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40% 이하 (맞벌이 20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자산(부동산, 자동차)	해당 없음	(세대)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45,420천원 이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검증함
-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혼인신고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맞벌이'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본 공고문에서 같음)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분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대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대대금납입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산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2024년 9월 30일 개정·10월 1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입주자저축 요건을 다음과 같이 인정하오니 청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가입된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개설 완료했을 경우 본 주택 청약이 가능하며, 각 공급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 및 배정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 때,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개설한 경우 청약저축 기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입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부터 납입실적을 인정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제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의거 **거주의무가 3년**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제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3년 (단,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
거주의무	거주의무 개시일	3년 (단,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3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함.)	「주택법」 제57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과거 해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해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나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어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또는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 [혼인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9조에 따른 특별 공급을 말함) 당첨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각호(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혼인특례 및 출산특례 중복 적용은 불가하므로, 청약 신청 전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청약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 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른 출산특례를 적용받아 해당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 소유 주택도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 출산특례를 신청하여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로 선정된 분은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출생)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불가 시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및 양육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체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자녀 양육사실 증명서류는 공적 서류 및 금융기관 발급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 신청결과 문자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지정처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배우자 외 세대원으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 분	공 고	점 수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특별공급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생애최초, 신생아)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일 정	2026.04.17.(금)	2026.04.27.(월)	2026.04.28.(화)	2026.04.29.(수)	2026.05.07.(목)	2026.05.14.(목) ~ 2026.05.23.(토) (10:00~17:00)	2026.06.28.(일) ~ 2026.07.01.(수) (10:00~17:00)
방 법	인터넷 청약(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 Home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현장방문접수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10:00~14:00)</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청약 Home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 Home" 검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청약 Home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 Home" 검색</li> </ul>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산 510-97번지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은 해당 일시 외에는 불가합니다.</li> <li>※ 당첨자의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접수 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li> <li>※ 예비입주자 등록 신청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이며, 연락처, 주소 오류 기재 또는 변경 시 즉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li> </ul>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의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급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 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0일 이내에 사업주체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부담하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사업주체는 인지세 부담액(1/2)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 발표이후 계약서는 1천만원 이하의 도급 증서로 별도의 인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 바랍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바라며,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중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미납, 과소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공급계약서, 중간 전매계약서, 최종 전매계약서 등은 각각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전매할 때마다 인지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민법」제158조에 의거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되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발표일 현재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무순위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재당첨 제한 사례 참고]  
 ※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됩니다.  
 ※ 아래 예시는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이전에 당첨된 사례로서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합니다.

- 2015년 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년 6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4년 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년 9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1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남)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재당첨 제한 기간 없음
- 2017년 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20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 격확인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제한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제2항에 의거,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 적용)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제3호)	10년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55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어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 **[혼인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20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은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 함에 유의)

■ 공급유형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공급유형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 주택 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무순위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일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종전 통장(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2026.4.16.)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이 각 공급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 및 배정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2026.4.17.) 이후 종전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순위확인)이 불가하며 추첨대상에서 제외]** 이 때,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저축 기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부터 납입실적을 인정합니다.

## I |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자격 등

- 1. 공급규모**
- 고덕신도시 아테라 : 공공분양주택 지하 1층~ 지상 27층 6개동, 전용면적 85㎡ 이하 630세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일반공급 160세대, 특별공급 470세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63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 63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 94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32세대, 신생아 특별공급 125세대,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30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 63세대) 포함]

**2. 공급대상** (단위:㎡,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타입 (약식 표기)	세대당 주택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발코니 확장 여부	발코니 면적 (㎡)	계	공급세대수										최하층 배정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변동가능)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특별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계약 면적 (계)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신생아	국가 유공자	기관 추천	소계	일반 공급			
				<b>합계</b>								630	63	63	94	32	125	30	63	470	160	26			
2026000124	01	074.5900A	74A	74.5900	26.9495	101.5395	7.1048	33.7901	142.4344	65.1864	확장	35.0600	180	14	18	27	9	36	9	21	134	46	8	'28.10	
	02	074.7200B	74B	74.7200	26.9964	101.7164	7.1172	33.8490	142.6826	65.3000	확장	38.4000	134	11	13	20	7	27	6	10	94	40	6		
	03	084.5600A	84A	84.5600	30.5516	115.1116	8.0545	38.3066	161.4727	73.8995	확장	38.1700	156	19	16	23	8	31	7	11	115	41	6		
	04	084.5600B	84B	84.5600	30.5516	115.1116	8.0545	38.3066	161.4727	73.8995	확장	36.6400	157	19	16	24	8	31	8	21	127	30	6		
	05	084.9400C	84C	84.9400	30.6889	115.6289	8.0906	38.4788	162.1983	74.2315	확장	39.8900	3	-	-	-	-	-	-	-	-	3	-		

※ [중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면적 등을 포함한 실거주면적은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https://www.arteragd.co.kr>)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은 주택형태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 완료하여야 합니다.(각 주택형태별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청약신청한 주택형에 따라 무작위로 배정되며, 분양가는 주택형태, 층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전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https://www.arteragd.co.kr>) 등을 통해 공급가격, 공급안내, 주택형태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태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천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태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별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대지비율은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소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2028년 10월로 예정 되어있으나,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본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2항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선정한 민간사업자 「금호건설(주), 우미건설(주), 신동아건설(주), ㈜신흥디앤씨」와 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부)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사업명: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63BL, 공동사업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금호건설(주), 우미건설(주), 신동아건설(주), ㈜신흥디앤씨]입니다.
- ※ 본 아파트의 브랜드명은 「고덕신도시 아테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3.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m<sup>2</sup>, 세대, 원)

주택형	타입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층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잔금(30%)			
						10%		중도금(60%)				입주 시 (주택도시기금 제외)	용자금 (주택도시기금)		
						계약 시	2026.11.19.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074.5900A	74A	180	1층	2	446,980,000	44,698,000	44,698,000	44,698,000	44,698,000	44,698,000	44,698,000	44,698,000	59,094,000	75,000,000	
			2층	7	451,740,000	45,174,000	45,174,000	45,174,000	45,174,000	45,174,000	45,174,000	45,174,000	45,174,000	60,522,000	75,000,000
			3층	8	461,250,000	46,125,000	46,125,000	46,125,000	46,125,000	46,125,000	46,125,000	46,125,000	46,125,000	63,375,000	75,000,000
			4층	8	470,760,000	47,076,000	47,076,000	47,076,000	47,076,000	47,076,000	47,076,000	47,076,000	47,076,000	66,228,000	75,000,000
			5층 이상	155	475,520,000	47,552,000	47,552,000	47,552,000	47,552,000	47,552,000	47,552,000	47,552,000	47,552,000	67,656,000	75,000,000
074.7200B	74B	134	1층	4	447,760,000	44,776,000	44,776,000	44,776,000	44,776,000	44,776,000	44,776,000	44,776,000	59,328,000	75,000,000	
			2층	5	452,530,000	45,253,000	45,253,000	45,253,000	45,253,000	45,253,000	45,253,000	45,253,000	45,253,000	60,759,000	75,000,000
			3층	6	462,050,000	46,205,000	46,205,000	46,205,000	46,205,000	46,205,000	46,205,000	46,205,000	46,205,000	63,615,000	75,000,000
			4층	6	471,580,000	47,158,000	47,158,000	47,158,000	47,158,000	47,158,000	47,158,000	47,158,000	47,158,000	66,474,000	75,000,000
			5층 이상	113	476,350,000	47,635,000	47,635,000	47,635,000	47,635,000	47,635,000	47,635,000	47,635,000	47,635,000	67,905,000	75,000,000
084.5600A	84A	156	1층	5	506,730,000	50,673,000	50,673,000	50,673,000	50,673,000	50,673,000	50,673,000	50,673,000	50,673,000	77,019,000	75,000,000
			2층	5	512,120,000	51,212,000	51,212,000	51,212,000	51,212,000	51,212,000	51,212,000	51,212,000	51,212,000	78,636,000	75,000,000
			3층	6	522,900,000	52,290,000	52,290,000	52,290,000	52,290,000	52,290,000	52,290,000	52,290,000	52,290,000	81,870,000	75,000,000
			4층	6	533,680,000	53,368,000	53,368,000	53,368,000	53,368,000	53,368,000	53,368,000	53,368,000	53,368,000	85,104,000	75,000,000
			5층 이상	134	539,080,000	53,908,000	53,908,000	53,908,000	53,908,000	53,908,000	53,908,000	53,908,000	53,908,000	86,724,000	75,000,000
084.5600B	84B	157	1층	5	506,730,000	50,673,000	50,673,000	50,673,000	50,673,000	50,673,000	50,673,000	50,673,000	50,673,000	77,019,000	75,000,000
			2층	6	512,120,000	51,212,000	51,212,000	51,212,000	51,212,000	51,212,000	51,212,000	51,212,000	51,212,000	78,636,000	75,000,000
			3층	6	522,900,000	52,290,000	52,290,000	52,290,000	52,290,000	52,290,000	52,290,000	52,290,000	52,290,000	81,870,000	75,000,000
			4층	6	533,680,000	53,368,000	53,368,000	53,368,000	53,368,000	53,368,000	53,368,000	53,368,000	53,368,000	85,104,000	75,000,000
			5층 이상	134	539,080,000	53,908,000	53,908,000	53,908,000	53,908,000	53,908,000	53,908,000	53,908,000	53,908,000	86,724,000	75,000,000
084.9400C	84C	3	26층	3	541,500,000	54,150,000	54,150,000	54,150,000	54,150,000	54,150,000	54,150,000	54,150,000	87,450,000	75,000,0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분양가는 층별, 타입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전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https://www.arteragd.co.kr>) 등을 통해 공급가격, 동호 배치도, 타입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용자금 안내] 해당 주택은 사업주체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 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 범위 내에서 대한(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자가 지정납부일 이전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만큼 연 5.0%(공고일 현재 기준, 변동 시 별도 안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최초일을 기준으로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음, 주택도시기금 용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 입주 시 용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한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사업주체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용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세대원 자격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하고,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업주체가 부적격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상 실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
-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 계약자는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추가선택품목(유상유선)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유선 품목(기본선택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유선 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 사항입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획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당첨자발표일 이후 안내 예정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별도의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이므로, 계약 전 가상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 아파트(계약금, 중도금, 잔금) 분양대금 납부계획과 주택도시기금 용자금 납부계획 및 납부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대금 납부계획은 세대별로 가상계좌를 부여할 예정으로 세대별 계좌번호가 상이 하므로 입주 시 유의 바랍니다.[개인별 납부계획(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6301동 302호 계약자 → '6301302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4. 발코니 확장 공사 및 추가선택품목

##### ☐ 발코니 확장 공사 및 추가선택품목

- ※ 본 단지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발코니 비확장 선택 불가)
- ※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주택타입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 및 추가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입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 계약의 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 VAT포함)

타입 (약식표기)	공급가격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	(계약 시)	2026.11.19.	(입주 시)
74A	6,477,000	647,700	647,700	5,181,600
74B	6,636,000	663,600	663,600	5,308,800
84A	7,076,000	707,600	707,600	5,660,800
84B	7,170,000	717,000	717,000	5,736,000
84C	7,880,000	788,000	788,000	6,304,000

-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급금액과는 별도로,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조명기구, 배선기구, 스마트스위치 등의 설치 수량 및 위치,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외부 사시, 확장형 주방가구, 확장 부위 마감 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납부금액	납부시기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공급금액의 10%	계약 시	당첨자발표일 이후 안내 예정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별도의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이므로, 계약 전 가상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중도금	공급금액의 10%	2026.11.19.			
잔금	공급금액의 80%	입주 시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좌는 세대별로 가상계좌를 부여할 예정으로 세대별 계좌번호가 상이 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6301동 302호 계약자 → '6301302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 상기계좌로 지정된 계약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지정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 비용은 아파트 분양대금과 별도로,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를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재 등은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창호 공사, 발코니 확장 공사 및 마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은 사업주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및 평면윤선, 특화품목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 스위치류, 분전함, 통신단자함 등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사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되거나 선홍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아파트 분양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이며 계약일정 및 내용, 납부일정 및 계좌, 제품 상세내용 등은 추후 별도로 분양계약자에게 공지 후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격은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 VAT포함)

타입 (약호)	구분	설치위치	실내기 설치대수	업체명	판매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 시)	2026.11.19.	(입주 시)	
74A	선택1	거실 + 침실1	2	LG전자	4,000,000	400,000	400,000	3,200,000	일반형
	선택2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4		6,700,000	670,000	670,000	5,360,000	
	선택3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알파룸	5		8,000,000	800,000	800,000	6,400,000	
74B	선택1	거실 + 침실1	2		4,000,000	400,000	400,000	3,200,000	
	선택2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4		6,700,000	670,000	670,000	5,360,000	
	선택3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알파룸	5		8,000,000	800,000	800,000	6,400,000	
84A	선택1	거실 + 침실1 + 주방	3		5,600,000	560,000	560,000	4,480,000	
	선택2	거실 + 침실1 + 침실2 + 주방	4		6,900,000	690,000	690,000	5,520,000	
	선택3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주방	5		8,100,000	810,000	810,000	6,480,000	
	선택4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4 + 주방	5		8,100,000	810,000	810,000	6,480,000	
	선택5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 주방	6		9,100,000	910,000	910,000	7,280,000	
84B	선택1	거실 + 침실1 + 주방	3		5,600,000	560,000	560,000	4,480,000	
	선택2	거실 + 침실1 + 침실2 + 주방	4		6,900,000	690,000	690,000	5,520,000	
	선택3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주방	5		8,100,000	810,000	810,000	6,480,000	
	선택4	거실 + 침실1 + 침실2 + 주방 + 알파룸	5		8,100,000	810,000	810,000	6,480,000	
	선택5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주방 + 알파룸	6		9,100,000	910,000	910,000	7,280,000	
84C	선택1	거실 + 침실1 + 주방	3		5,600,000	560,000	560,000	4,480,000	
	선택2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주방	5		8,700,000	870,000	870,000	6,960,000	
	선택3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주방 + 가족실	6		9,500,000	950,000	950,000	7,600,000	
74A	선택1	거실 + 침실1	2		4,500,000	450,000	450,000	3,600,000	프리미엄
	선택2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4		7,300,000	730,000	730,000	5,840,000	
	선택3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알파룸	5		8,600,000	860,000	860,000	6,880,000	
74B	선택1	거실 + 침실1	2		4,500,000	450,000	450,000	3,600,000	
	선택2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4		7,300,000	730,000	730,000	5,840,000	
	선택3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알파룸	5		8,600,000	860,000	860,000	6,880,000	
84A	선택1	거실 + 침실1 + 주방	3		6,100,000	610,000	610,000	4,880,000	
	선택2	거실 + 침실1 + 침실2 + 주방	4		7,700,000	770,000	770,000	6,160,000	
	선택3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주방	5		8,800,000	880,000	880,000	7,040,000	
	선택4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4 + 주방	5		8,800,000	880,000	880,000	7,040,000	
	선택5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 주방	6		9,800,000	980,000	980,000	7,840,000	
84B	선택1	거실 + 침실1 + 주방	3	6,100,000	610,000	610,000	4,880,000		
	선택2	거실 + 침실1 + 침실2 + 주방	4	7,700,000	770,000	770,000	6,160,000		
	선택3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주방	5	8,800,000	880,000	880,000	7,040,000		
	선택4	거실 + 침실1 + 침실2 + 주방 + 알파룸	5	8,800,000	880,000	880,000	7,040,000		
	선택5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주방 + 알파룸	6	9,800,000	980,000	980,000	7,840,000		
84C	선택1	거실 + 침실1 + 주방	3	6,100,000	610,000	610,000	4,880,000		
	선택2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주방	5	9,400,000	940,000	940,000	7,520,000		
	선택3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주방 + 가족실	6	10,300,000	1,030,000	1,030,000	8,240,000		

2) 빌트인가전

(단위 : 원 / VAT포함)

품목		주택형 (타입)	제품명	업체명	판매금액	계약금(10%) (계약 시)	중도금(10%) 2026.11.19.	잔금(80%) (입주 시)	비고		
냉장고 + 김치냉장고	LG Objet (4+3도어, 냉장/냉동+김치) GLASS + 수납장	전주택형	M62BAAA332(냉동/냉장 4도어) + Z334AAA151(김치 3도어) + 수납장	LG전자	7,200,000	720,000	720,000	5,760,000	냉장고장 포함		
	LG Objet (3도어, 냉장+냉동+김치) GLASS + 수납장		BC1F4AA(냉동) BC1L4AA(냉장) BC1K4AA(김치) + 수납장		6,600,000	660,000	660,000	5,280,000			
냉장고	LG Objet (4도어, 냉장/냉동) GLASS + 홈카페장		M62BAAA332(냉동/냉장 4도어) + 홈카페장		6,000,000	600,000	600,000	4,800,000			
	LG Objet (2도어, 냉장+냉동) GLASS + 홈카페장		BC1F4AA(냉동)+ BC1L4AA(냉장) + 홈카페장		5,600,000	560,000	560,000	4,480,000			
천장형 제습기				CDD-600B	코스텔	800,000	80,000	80,000		640,000	드레스룸
전기오븐				MZ385EBT1.CKOR	LG전자	400,000	40,000	40,000		320,000	일반형
				MZ941CLCAT.CKOR		800,000	80,000	80,000		640,000	고급형
식기세척기				DIE5PT	LG전자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일반형(14인용)
				DIE6PT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고급형(14인용)
전기쿠포	인덕션 3구(블랙)			CIRS-FL301FB-S	쿠쿠	500,000	50,000	50,000		400,000	가변공간 선택 시 필수 선택
	인덕션 3구(화이트)		BEI3WWQLBI	LG전자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3) 가구 및 마감재

(단위 : 원 / VAT포함)

품목	주택형 (타입)	설치위치	판매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10%) (계약 시)	(10%) 2026.11.19.	(80%) (입주 시)				
현관중문	전타입	중문 3연동 도어(1FIX + 2DOOR), 신발장하부 간접조명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바닥 특화	선택1	74A	비동조 열보 광폭 강마루	600,000	60,000	60,000	480,000			
		74B		600,000	60,000	60,000	480,000			
		84A		670,000	67,000	67,000	536,000			
		84B		670,000	67,000	67,000	536,000			
		84C		700,000	70,000	70,000	560,000			
	선택2	74A	SPC 바닥재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74B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84A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84B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84C		3,800,000	380,000	380,000	3,040,000			
거실특화	74A	세라믹타일 아트월, 시트판넬+가구FIX판넬+프리미엄 히든도어(침실1,2,3, 알파룸, 욕실1), 픽처레일	9,600,000	960,000	960,000	7,680,000				
	74B		9,600,000	960,000	960,000	7,680,000				
	84A		10,900,000	1,090,000	1,090,000	8,720,000				
	84B		10,900,000	1,090,000	1,090,000	8,720,000				
	84C		10,900,000	1,090,000	1,090,000	8,720,000				
주방 벽/ 상판마감	선택1	74A	엔지니어드스톤 + 상부장 하부 LED조명, 무선충전 매입콘센트	2,600,000	260,000	260,000	2,080,000			
		74B		2,600,000	260,000	260,000	2,080,000			
		84A		3,000,000	300,000	300,000	2,400,000			
		84B		3,000,000	300,000	300,000	2,400,000			
		84C		2,700,000	270,000	270,000	2,160,000			
	선택2	74A	세라믹타일 + 상부장 하부 LED조명, 무선충전 매입콘센트	6,200,000	620,000	620,000	4,960,000			
		74B		6,200,000	620,000	620,000	4,960,000			
		84A		8,000,000	800,000	800,000	6,400,000			
		84B		8,000,000	800,000	800,000	6,400,000			
		84C		7,000,000	700,000	700,000	5,600,000			
가변공간 및 마감특화	선택1	74A	와이드주방	홈 바 + 팬트리(가구도어+시스템선반) + 거실특화 + 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18,800,000	1,880,000	1,880,000	15,040,000	
	선택2	세라믹타일			23,900,000	2,390,000	2,390,000	19,120,000		
	선택1	74B	알파룸	슬라이딩도어[1SD] + 공돌 + 복도팬트리(가구도어+시스템선반) + 거실특화 + 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18,800,000	1,880,000	1,880,000	15,040,000	
	선택2				세라믹타일	23,900,000	2,390,000	2,390,000	19,120,000	
	선택1	74B	수납강화	복도 팬트리(가구도어+시스템가구) + 수납장 + 침실3 드레스룸(가구도어+시스템가구) + 거실특화 + 주방특화 *침실3 불박이장과 중복 선택 불가	엔지니어드스톤	19,700,000	1,970,000	1,970,000	15,760,000	
	선택2				세라믹타일	24,700,000	2,470,000	2,470,000	19,760,000	
	선택1	84A	클리닝스테이션	'11자(아일랜드형) 주방가구 + 팬트리(가구도어+시스템가구) + 클리닝스테이션(가구도어+클리닝스테이션가구) + 홈바 + 거실특화 + 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20,500,000	2,050,000	2,050,000	16,400,000	
	선택2				세라믹타일	24,800,000	2,480,000	2,480,000	19,840,000	
	선택1	84A	와이드주방	'c자형' 주방가구 + 홈 바 + 멀티룸 슬라이딩도어 + 거실특화 + 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19,000,000	1,900,000	1,900,000	15,200,000	
	선택2				세라믹타일	24,200,000	2,420,000	2,420,000	19,360,000	
	선택1	84B	클리닝스테이션	클리닝스테이션(가구도어+클리닝스테이션가구) + 홈바 + 거실특화 + 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21,900,000	2,190,000	2,190,000	17,520,000	
	선택2				세라믹타일	26,800,000	2,680,000	2,680,000	21,440,000	
	불박이장	74A	침실2 슬라이딩 불박이장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74B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84A		2,100,000		210,000	210,000	1,680,000				
84B		2,100,000		210,000	210,000	1,680,000				
84C		2,100,000		210,000	210,000	1,680,000				
74A		침실3 슬라이딩 불박이장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74B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84A			2,100,000	210,000	210,000	1,680,000				
84B			2,100,000	210,000	210,000	1,680,000				
84C			2,100,000	210,000	210,000	1,680,000				
욕실 스타일업	74A	공용욕실 : 욕실 벽/욕조 에이프런(포세린타일), 디자인 욕실장+간접조명, 수납형 욕조수전, 수전/약세사리 니켈 무광 마감, 복합 환풍기, 청소수전	부부욕실 : 욕실 벽(포세린타일), 디자인 욕실장 + 간접조명, 샤워부스 무광 니켈 프레임, 캔버스 샤워수전, 수전/약세사리 니켈 무광 마감, 복합 환풍기, 청소수전	3,800,000	380,000	380,000	3,040,000			
	74B			3,800,000	380,000	380,000	3,040,000			
	84A	공용욕실 : 욕실 벽/욕조 에이프런(포세린타일), 디자인욕실장+간접조명, 수납형 욕조수전, 수전/약세사리 니켈 무광 마감, 복합 환풍기, 청소수전 *욕실1 공간흡션 선택 시 여닫이 욕실장(간접조명)으로 변경됨	부부욕실 : 욕실 벽(포세린타일), 디자인 욕실장 + 간접조명, 샤워부스 무광 니켈 프레임, 캔버스 샤워수전, 수전/약세사리 니켈 무광 마감, 복합 환풍기, 청소수전	3,800,000	380,000	380,000	3,040,000			
	84B			3,800,000	380,000	380,000	3,040,000			
	84C			3,800,000	380,000	380,000	3,040,000			
욕실1 공간흡션 (공용욕실)	84A	욕실 스타일업 + 여닫이 욕실장 + 건식 세면대 + 조명형 거울 + 벽:스톤보드/바닥:타일 + 스윙도어	5,300,000	530,000	530,000	4,240,000				
84B	5,300,000		530,000	530,000	4,240,000					
드레스룸 특화	선택1	74A	화장대 분리형 : 드레스룸 벽판넬 조명형 선반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74B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84A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84B		2,600,000	260,000	260,000	2,080,000			
		84C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선택2	74A	화장대 통합형 : 드레스룸 벽판넬 조명형 선반, 디자인 파우더장, 슬라이딩도어	2,400,000	240,000	240,000	1,920,000			
		74B		3,300,000	330,000	330,000	2,640,000			
		84A		2,600,000	260,000	260,000	2,080,000			
		84B		3,300,000	330,000	330,000	2,640,000			
		84C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슬라이딩도어	전타입	파우더룸 슬라이딩도어[1SD] ※ 드레스룸 특화2 선택 시 선택불가	700,000	70,000	70,000	560,000				
조명특화	74A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 라인조명(직부등 삭제), 거실(아트월) 단천장 + 간접조명, 주방 우물천장(신설) + 직간접 라인조명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74B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84A		2,700,000	270,000	270,000	2,160,000				
	84B		2,700,000	270,000	270,000	2,160,000				
	84C		2,800,000	280,000	280,000	2,240,000				

###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납부금액	납부시기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공급금액의 10%	계약 시	당첨자발표일 이후 안내 예정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별도의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이므로, 계약 전 가상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중도금	공급금액의 10%	2026.11.19.			
잔금	공급금액의 80%	입주 시			

-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는 세대별로 가상계좌를 부여할 예정으로 세대별 계좌번호가 상이 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사업주체는 납부시기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6301동 302호 계약자 → '6301302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 상기계좌로 지정된 계약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지정된 추가선택품목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은 아파트 분양대금과 별도로,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추가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전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으로 인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 시스템에어컨은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사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는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 및 추가가 불가합니다.
- ※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은 무선리모콘으로 제어하며, 실내기 1대당 무선리모콘 1개가 제공됩니다.
-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 스탠드형, 침실1 벽걸이형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가 시공됩니다.
-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거실과 침실1에 기본 제공되는 냉매배관 및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으며, 상기 판매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 빌트인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등 옵션품목 미선택시에는 가구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미선택시,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설치 할 수 있는 장이 제공되며 가구 문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미선택시, 일반 냉장고, 김치냉장고가 장에 비하여 다소간 튀어 나올 수 있습니다.
- ※ 전기쿡탑 옵션품목 미선택시에는 3구형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 ※ 오브제 빌트인 냉장고는 배치 순서, 문열림 방향, 도어 마감 재질 및 색상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오브제 패키지 마감사양은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 시 제조사의 사정으로 단종될 경우 대체 모델이 설치됩니다.
- ※ 평면선택 옵션에 따라 마감재의 수량 및 적용되는 제품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차액에 대해서는 평면옵션 비용 산출 시 반영되어 있습니다.
- ※ 주방특화 설치품목 : 주방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or세라믹타일), 플랩장(매립형상하부조명), 주방상판하부 LED조명, 독립형후드, 무선충전매입콘센트(인덕션 필수선택조건)

## 5.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 ■ 공통

- ※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 천장, 일반가구, 주방, 욕실, 창호, 조명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구분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① 문	문틀(상부마감판, 문선, 목재공을 포함), 문짝, 도어록, 경첩, 도어체크, 디지털도어록(현관), 실외기실 문	욕실문을 하부 썬,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일반형 도어록), 방화문을 및 문짝, 내·외부 PI창호, 주방 도어, 실외기그릴창
② 바닥	강마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바닥재, 마루귀틀),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시멘트몰탈 포함)	바닥방수(방수 시공부위만 해당),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고정목적)
③ 벽	경량벽체(방, 거실, 주방 등 각 실을 구분하는 벽체는 제외) 벽지(조폐포함),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등)	방, 거실, 주방 등 각 실을 구분하는 조적벽체, 석고보드, 단열재, 발코니 벽 도장, 거실 세대단말기(Wall Pad)
④ 천장	벽지(조폐포함), 우물천장, 등박스, 반사돌림, 무선AP	경량천장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 천장 도장, 환기시설, 스피커
⑤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비데 등), 수전류, 욕실전등, 인조대리석, 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천장재(천장틀포함), 샤워부스, 욕실팬, 비상콜, 욕실수납장, 액세서리 일체	벽 및 바닥방수, 전기설비배관-배선, 기계설비 배관, 배기덕트
⑥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레인지후드, 음식물탈수기), 벽타일, 액세서리류 일체, 수전(절수기 포함)	석고보드, 소방관련 시설, 기계설비 배관, 배기덕트
⑦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⑧ 일반가구	신발장, 팬트리(시스템 선반 포함), 드레스룸장(시스템선반 포함), 반침가구(문짝포함), 선반을 포함한 수납장, 화장대 등 가구일체	-
⑨ 기타	-	발코니 배수 및 입상배관

-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 품목 등은 마감재 리스트 품목에 준합니다.(마감재 리스트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 원)

타입 (부호)	74A	74B	84A	84B	84C
금액	38,863,000	38,863,000	39,129,000	34,159,000	33,943,000

-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세대별 공급금액(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금액으로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유의사항

-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선택할 수 없으며,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는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시공 및 하자보수가 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청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구조체 및 마감공사 품목, 창호·방화문, 전기배관 등 시설물,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공사 자재 제공불가)
- ※ 적절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시행자 시공분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한 후 마이너스옵션 선택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인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반적으로 하자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의 의무는 입주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식 소화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상부장 및 렌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가스쿠팅은 가스관련 규정 개정으로 과열방지장치 부착 제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시설물(자동식소화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선행공사(렌지후드 등)는 사업주체가 원하는 시기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미설치로 인한 미준공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호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으로 인한 자재 등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미처리로 인한 청소비용은 계약자에게 청구됩니다.

## 6. 입주금 납부, 중도금 대출 관련 유의사항

-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자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은행 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 중도금 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공고일 현재 기준, 변동 시 별도 안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주택도시자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 선납할인인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일 선납할인 기준일 변경으로 인해 잔금 전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주택도시자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공고일 현재 연 7.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 상기 선납할인율,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우리공사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선납할인율의 경우 선납 시점의 이율을 적용하고, 연체이율의 경우 이율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율변경을 사유로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 등의 산정은 평년의 경우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계약자의 개인 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 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 가능하나, 융자금액은 향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금액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 사업주체에서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수수료,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적격대출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분양대금의 중도금 범위 내에서 60% 중도금 대출 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건에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입주지정 기간(추후 별도 안내) 종료일 또는 실입주일(열쇠수령일) 중 빠른 날로부터 잔금완납이나 입주 및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중 선 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자의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입주예정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의거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 계약서에 따릅니다.
- ※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인해 LTV에 중도금 대출액이 포함됨에 따라 주택도시자금 실행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를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II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 · 자산)

### 1. 공급구분별 지역 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평택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공급하며,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전국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전국 거주)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전국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전국 거주 공급물량에 포함)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04.17.)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평택시)	30%	· 공고일 현재 경기도 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25.04.17. 이전부터 계속하여 평택시 거주 (2025.04.17.전입한 경우 포함)
	② 경기도	20%	·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25.10.17.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거주 (2025.10.17.전입한 경우 포함)
	③ 기타지역(전국)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전국에 거주하는 분

- ※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사업주체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 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하되, 공급세대가 최소물량(3세대 미만)일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취지를 감안하여 해당지역→경기도→기타지역(전국) 순으로 배정합니다.
- ※ 평택시 1년 이상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점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점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기타지역(전국)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 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 평택시 1년 이상 계속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 후 최종 미달된 세대는 기타지역(전국) 공급세대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04.17.)	① 경기도	50%	·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단, 남은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 · 주민등록표등본상 2025.04.17. 이전부터 계속하여 평택시 거주 (2025.04.17.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기타지역(전국)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전국에 거주하는 분

- ※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사업주체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 경기도 거주자에게 50%, 기타지역(전국) 거주자에게 50% 각각 배정하되, 경기도 청약자 중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단,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6개월 미만)기타지역(전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경기도 거주자가 지역우선공급에서 낙점될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때 지역우선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공급물량을 상기 지역 우선공급 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경기도에 우선 배정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일(2026.05.07.) 후 주택(분양권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20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을 승낙하여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직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분양권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혼인신고 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등 포함)의 범위

-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산정 기준

-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 무허가건물(중천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 해당 조항의 소명자료로 해당 건물이 속한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할 경우, 해당 서류에는 반드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함 등의 문구가 표시되어야 하며, 그 외(발급기관 자체 양식에 따른 해당 문구 미포함 등 기타 사유 인정 불가)하며, 소명 책임은 담당자 본인에게 있음)에는 불인정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023.0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 ※ 주택공급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3.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

■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공적 서류에 한하여 인정. 단순 연락두절 등 기타 사유 인정 불가)를 확인하고 자산보유기준 산정 대상에서 제외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사업주체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청약 전 위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보유자산 기준시점 등)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7.)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무순위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를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4항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 소유 주택도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접수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rowspan="2">건 물</td> <td>건물</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r> <td>시설물</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건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건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li> <li>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 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li> <li>- 「조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자동차	45,420천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li> <li>-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li> <li>-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li> </ul>														

※ (출산가구 자산기준 완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0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구분	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①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②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③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건물+토지)	237,050천원 이하	258,600천원 이하	215,500천원 이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참고
자동차	49,960천원 이하	54,510천원 이하	45,420천원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단, 당첨자 자격검증을 위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등에서 출력한 단순 열람용 서류 인정불가
  - 온라인 조회 시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별도 확인 필요

■ 차량기준가액 자료 출처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군·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5년식 자동차를 2024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 4. 소득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 소득기준 적용

※ 사업주체는 당청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청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청약 전 위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7.)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단위 : 원]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생애 최초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신혼 부부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배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신생아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300,645	13,203,303	13,990,478	14,859,395	15,728,312	16,597,229	
배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0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단위 : 원]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90%	6,780,387	7,921,982	8,394,287	8,915,637	9,436,987	9,958,33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8,287,139	9,682,422	10,259,684	10,896,889	11,534,095	12,171,30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11,300,645	13,203,303	13,990,478	14,859,395	15,728,312	16,597,22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60%	12,054,021	14,083,523	14,923,176	15,850,021	16,776,866	17,703,7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70%	12,807,397	14,963,743	15,855,875	16,840,647	17,825,420	18,810,19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10%	15,820,902	18,484,624	19,586,669	20,803,152	22,019,636	23,236,1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20%	16,574,279	19,364,844	20,519,367	21,793,779	23,068,190	24,342,602

※ 가구원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주주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신혼부부·다자녀·신생아 특별공급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구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위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 단, 세대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무순위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를 받게 됩니다.

####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보험료 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의 소득자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될 수 있으며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국민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 자료→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합니다.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자료를 적용하므로, 청약 전 반드시 휴직자 본인의 정상근무기간 소득을 조회·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 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 I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7.)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10년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우수선수,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 경기남부보훈지청(국가유공자), 지자체(장애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북한이탈주민), 국군복지단(10년 이상 복무군인), 경기지방중소기업청(중소기업근로자), 팽택시청 사회복지과(의사상자), 통일부(납북피해자), 경기도청 이인사회지원과(다문화가족), 대한체육회(우수선수), 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등

##### ■ 기관추천 배정세대수

구분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합계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소유자(지자체)	10년이상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우수선수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소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74A	4	3	1	2	5	1	1	1	1	1	1	21	9	30
74B	3	2	-	1	4	-	-	-	-	-	-	10	6	16
84A	3	2	1	1	4	-	-	-	-	-	-	11	7	18
84B	4	3	1	2	5	1	1	1	1	1	1	21	8	29
계	14	10	3	6	18	2	2	2	2	2	2	63	30	93

##### ■ 유의사항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6.04.27.)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 당첨자 선정방법

- ※ [중요]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합니다.

####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7.) 현재 팽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만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다자녀가구 우선공급 (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다자녀가구 추천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 분양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출산특례] 20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 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이 속한 시도(경기도)에 거주자에게 50%(단,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남은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공급),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태 공급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이 속한 시도(경기도)에 거주자에게 50%(단,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남은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공급),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할당)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4명 이상 3명 2명	40 35 25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2명 1명 0명	15 10 5 0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세 미만의 자녀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해당없음	5 5 0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 기간 (4)	20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해당없음	20 15 10 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해당 시도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미거주	15 10 5 0	공급신청자가 만 19세 이후부터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해당없음	5 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무주택 기간(4) 산정** : 신청자가 만19세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되, 신청자 및 배우자가 각각의 과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체기간으로 판단 (단,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은 무관)

- 예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 예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7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하고 25세에 혼인)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 예3)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7세인 배우자(25세에 혼인 이후 소유하던 주택을 26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1년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신청자가 만19세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 예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 예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 예3)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7.)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노부모부양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부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예시 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을 적용 받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특례] 20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어나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 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2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선정방법

#####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 2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계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본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본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4. 생애최초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7.)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한정한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신청자의 태아포함)가 있는 분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임신 및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⑤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구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생애최초 일반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생애최초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액(원) + 초과 1인당 소득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유의사항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또는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혼인신고일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 본 아파트는 공공분양주택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 1인 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신청자의 태아 포함)도 없는 신청자(1인 가구가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 후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 당첨자 선정방법

####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본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본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 합니다.

## 5. 신혼부부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7.)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2019.04.17.~2026.04.17.에 속한 자)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사업주체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함(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단, 추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구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신혼부부 일반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신혼부부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유의사항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분양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을 적용 받는 경우는 제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 [혼인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단,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혼인특례 및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으므로, 청약 신청 전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청약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 당첨자 선정방법

####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수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b>1순위</b>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b>신혼부부</b> ②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 자녀를 둔 <b>한부모가족</b>
<b>2순위</b>	① <b>예비신혼부부</b>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b>신혼부부</b>

- ※ (출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임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로 확인합니다.
-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하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혼) 임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가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1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해당없음	0	
나. 자녀의 수	3명 이상	3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2명	2	
	1명	1	
	0명	0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	해당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해당없음	0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12회 이상 24회 미만	2	
	6회 이상 12회 미만	1	
마. 혼인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3년 이하	3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선택 불가
	3년 초과 5년 이하	2	
	5년 초과 7년 이하	1	
	7년 초과	0	
바. 자녀의 나이 (한부모가족에 한함)	2세 이하(만3세 미만)	3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같은 연령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으로 봄)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2세 초과 4세 이하(만 5세 미만)	2	
	4세 초과 6세 이하(만 7세 미만)	1	
	해당없음	0	

**※ '가. 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단위 :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 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자녀수' 산정방법**

- (일반) 임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를 말함)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마. 혼인기간' 관련**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6. 신생아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7.)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2세가 되는 날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출생)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 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상태가 입주기간 시작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입주기간 시작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자녀 양육사실 증명서류는 공적 서류 및 금융기관 발급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 신청결과 문자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구분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신생아 일반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300,645	13,203,303	13,990,478	14,859,395	15,728,312	16,597,229
신생아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을 적용 받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20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어나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2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선정방법

####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가점항목

가점기준		점수	비 고
기준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1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해당없음		
나. 자녀의 수	3명 이상	3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2명	2	
	1명	1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	해당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해당없음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12회 이상 24회 미만	2	
	6회 이상 12회 미만	1	

※ '가. 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단위 : 원]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미성년 자녀의 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생아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본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본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 합니다.

## 7. 일반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7.)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2페이지 참조)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주택공급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당첨자 선정방법

####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태아를 포함)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물량의 5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동일 지역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시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

####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해당사항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표. 신청기준의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 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만32세 미혼(만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 현재 만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 2단계 우선공급(1순위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낙첨자”<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 요건”에 따른 1순위자로 한정)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물량의 30%(소수점 이하는 올림)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잔여물량을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과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및 2단계 우선공급(1순위자)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해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당첨자는 다음 각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생)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자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체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됩니다.

※ 동별·층별·방향별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평택시(1년 이상 계속 거주), 경기도(6개월 이상 계속 거주), 기타(경기도 6개월 미만, 전국) 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신청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방향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IV 신청 시 확인사항

### 1.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 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재당첨제한, 특별공급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3. 주택소유확인	
4.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모든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주택에서 청약대행접수는 불가하며,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경우 고덕신도시 아테라 건본주택(☎1833-63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급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 또는 전매행위 제한 위반자로서 그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는 급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또는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을 승낙하여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2. 전매 제한, 주택우선매입 안내

- 급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6.05.07.)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 전매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영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의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3. 거주무의 안내

- 급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에 의거 입주자에게 거주무가 부여됩니다. 거주무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해당 거주무 개시일부터 3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무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4.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관리

- 급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타입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 분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신청방법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일자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약을 하고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주택 우선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인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인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표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6.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공통 적용사항

-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2페이지 참조)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무순위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등]
-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본 단 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본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단,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무순위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외 예비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 기관추천·국가공유자 특별공급

- ※ 기관추천·국가공유자 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7. 예비입주자 등에 대한 사항

### ■ 공통 적용사항

-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사업주체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 사전청약 특별공급 당첨자 및 본청약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 주택타입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 ※ 예비입주자의 경우 서류접수 및 추첨계약기간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계약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건본주택 방문 또는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변경 및 사업주체에 고지하여야 하고,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기타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26조의2를 준용합니다.

### ■ 특별공급

-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전체 공급량의 50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합니다. 각 주택형별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일반공급

-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타입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각 주택타입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타입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 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예비입주자의 경우 Ⅱ. 신청 기준의 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V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추천·국가공유자 특별공급 (국가공유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소유자, 10년 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우수선수,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li> <li>다자녀가구 특별공급</li> <li>노부모부양 특별공급</li> <li>생애최초 특별공급</li> <li>신혼부부 특별공급</li> <li>신생아 특별공급</li> </ul>	2026.04.27.(월) (09:00 ~ 17:30)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가능)	<b>청약Home</b> (www.applyhome.co.kr)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해 현장접수 가능
		※ 방문신청 시 (10:00 ~ 14:00)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순위</li> <li>2순위</li> </ul>	2026.04.28.(화) (09:00 ~ 17:30)	인터넷 신청	<b>청약Home</b> (www.applyhome.co.kr) 및 모바일앱
		2026.04.29.(수) (09:00 ~ 17:30)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 Home(www.applyhome.co.kr)]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산 510-97번지)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단, 은행 접수 불가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은행 영업시간 내)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신청 시 유의사항

- **[중요]** 청약 신청자는 직접 견본주택 관람 또는 고덕신도시 아태라 홈페이지(<https://www.arteragd.co.kr>)를 통한 공급주택타입별 평면도를 확인 후 인터넷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실물 유닛을 보지 못하고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것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및 공급안내문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타입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신청기한이 지나면 주택타입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타입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타입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 중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특별공급 신청 당일, 10:00 ~ 14:00까지에 한함). 단,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기관추천·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점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 자자책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접수,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및 모바일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VI 신청방법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1. PC인터넷·모바일 신청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하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청약통장 가입은행)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b>본인 신청 시</b>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입주자자책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b>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b>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	-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 <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정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내용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4.17.)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평택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평택시)", 과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경우 "경기도", 그 외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자책 사용 제한, 해당 주택 무순위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를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분	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VII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 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공급계약 체결(당첨자)	예비입주자 추첨 및 계약
2026.05.07.(목)	2026.05.14.(목) ~ 2026.05.23.(토) (10:00~17:00)	2026.05.14.(목) ~ 2026.05.23.(토) (10:00~17:00)	2026.06.28.(일) ~ 2026.07.01.(수) (10:00~17:00)	추후 일정 별도 안내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산 510-97번지(구비서류 등 지침 방문)			

※ 상기 표의 일정이 변동될 시에는 홈페이지(<https://www.arteragd.co.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추첨 및 계약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상기 해당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여부, 과거 당첨 사실 여부 및 소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발표 후 서류제출에 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사업주체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문자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5.07.(목) ~ 2026.05.16.(토)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안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제공일시 : 2026.05.07.(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써 정확한 당첨 여부는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현장접수(특별공급) 또는 은행 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화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화가 불가(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여부, 과거 당첨 사실 여부 및 소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발표 후 서류제출에 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명단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 2.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2026.05.14.(목)~2026.05.23.(토)]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 입주자)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를 표시하여 발급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접수장소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 고덕신도시 아테라 홈페이지(https://www.arteragd.co.kr)에 게시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당첨자 신분증	본인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주민등록표등본 (전부 포함)	본인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상기 등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부 포함)	본인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과거 주소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개명 이력 포함)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초본 추가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세대구성원 전부) • 당첨자의 (예비)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2세 미만 자녀(입양 포함) 증빙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또는 신생아 우선공급 미적용 시에도 세대원 자격 확인 위하여 필수 제출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관계 불인정)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해당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혼인하지 않은 단독세대의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사실 여부 증빙 위하여 제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소득 및 보유자산 관련 출산가구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이 만 18세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임신중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나,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 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및 배우자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 포함]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 관련 서류 제출을 약속(건본주택 비적용)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 포함] 2세 미만 자녀, 2023.03.28.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01.0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01.0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7.)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기록대조일 동일) 모두 제출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양육사실 증빙)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양육사실 증빙)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처본 불인정) ※ 회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수령내역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양육사실 증빙) 급여 수령 내역 확인
○		통장사본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양육사실 증빙) 급여 수령 내역 확인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 당첨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위임장	본인	•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 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등록표초본 대리인 발급 시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미포함하여 발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니다. 대리인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반드시 과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요청하시기 바라며, 미표기 시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 세대주 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초본(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 상기 구비사항 외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자격확인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제출한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당첨자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를 표시하여 발급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접수장소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 고덕신도시 아테라 홈페이지( <a href="https://www.arteragd.co.kr">https://www.arteragd.co.kr</a> )에 게시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당첨자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주민등록표등본(전부 포함)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주민등록표등본(전부 포함)	(예비)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주민등록표초본(전부 포함)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주민등록표초본(전부 포함)	(예비)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예비)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특례 관련]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출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또는 출산특례 미적용 시에도 세대원 자격 확인 위하여 필수 제출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예비)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관계 불인정)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세대구성원 전부)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명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해당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혼인하지 않은 단독세대의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사실 여부 증빙 위하여 제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자녀	자녀	• 소득 및 보유자산 관련 출산가구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이 만 18세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및 (예비)배우자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임신중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나,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 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및 (예비)배우자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약속(접수장소 비치) • [출산특례 관련] 20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출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및 (예비)배우자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023.3.28.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출산특례 관련] 20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출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출산특례 관련] (양육사실 증빙)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 [출산특례 관련] (양육사실 증빙)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처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7.)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제외	
○		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인등록증	(예비)배우자, 세대원	• 당첨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및 (예비)배우자	• [출산특례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구분	서류 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부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 산정 시) • 한부모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정(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만 18세 자녀를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 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부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함하여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08.1.1. 전에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7.)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관계 불인정)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의「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만 해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예비배우자	•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주체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		예비신혼부부 서약서	본인 및 예비배우자	• 만 18세 자녀를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예비)배우자	• 접수장소에 비치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기본증명서	자녀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 예비신혼부부로서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1순위자로서 혼인기간 중 자녀 출생 일자 확인 필요 시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 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예비)배우자	• 입양의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예비배우자	• 한부모가족으로 자녀의 나이 배정(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선택 불가 ※ 태아의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 선택 불가
	○		주민등록표초본(전부 포함)	직계존속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전 사업주체에서 제공하는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제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 전 재당첨, 주택소유사실 여부 확인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만 18세 자녀를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 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 비치)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9> 참고)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9>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구분	서류 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신생아 특별공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2세 미만 자녀(입양 포함) 증빙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자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2세 미만의 자녀)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2세 미만 자녀를 증빙하고자 하나, 출생 신고 전인 경우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함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담당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하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 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약속(건본주택 비치)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양육사실 증빙)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수령내역	본인 또는 배우자	• (양육사실 증빙)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처본 불인정) ※ <b>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b>
		○	통장사본	본인 또는 배우자	• (양육사실 증빙) 급여 수령 내역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 전 당첨 여부 확인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공금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 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위임장	본인	• 공금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 접수장소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등록표초본 대리인 발급 시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미포함하여 발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리인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반드시 과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요청하시기 바라며, 미표기 시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예 : 세대주 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초본(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가족관계증명서 상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구비사항 외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자격확인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표9>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공고일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공고일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 또는 스캔본으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제출서류 ※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구분	서류 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명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및 파견,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증명서류 제출이 불가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단신부임) ※ 청약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등본에 분리된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포함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7.)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 본 추가 제출 필요(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주민등록표초본 (전부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①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입금확인증 등) ※ 현장 수납 불가 ※ 분양대금, 발코니확장 대금, 추가선택품목 가상계좌가 모두 상이하며, 계약금 확인 후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③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및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가능(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계약 불가)
	④ 증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사본) ※ 기재금액 1억 초과 10억 이하 : 15만원[계약자가 100% 납부 후 사업주체 부담분 50%는 향후 분양잔금에서 차감] ※ 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우편물 취급소 불가), 은행에서 증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 시 사본 첨부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 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음
	⑤ 자격 검증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요청한 서류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① 위임장(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원본)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 제출처 : 금호건설]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호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 접수 불가)
-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입주금 및 금융비용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격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 제외)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분양사무실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제한됩니다.
-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를 준용합니다.

####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 관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지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VII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건본주택 및 공급안내문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무순위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를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 주택가격(선택사양품목 가격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율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율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최소 45일 이상 제공될 예정입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주체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3.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1층	2.7M	2.7M

### 4.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현 관	마루굽들 경사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주 방	좌식 싱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거실	비디오폰 높이조정, 야간 센서등	
욕실 1개소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 확대 및 방향 조정, 좌식 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낮아이조절 세면기		기타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음성유도 신호기	시각장애인

※ 신청시기 : 최초 계약체결기간 (2026.06.28.~2026.07.01.) 내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호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5. 유의사항(상품)

■ 공통 유의사항

<p>일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단지 명칭은 '고덕신도시 아테라'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아파트 명칭 및 팻네임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변경될 수 있음.</li> <li>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li> <li>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추가요구 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li> <li>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li> <li>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타입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함.</li> <li>입주 이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입주자에게 있음을 숙지 하시기 바람.</li> <li>본 공동주택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함. 아울러, 대지면적 및 지분 감소에 따른 비용 정산을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여야 함.</li> <li>인허가 상의 사유로 인해 단지 내 시설물의 형태 및 위치, 마감,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당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및 측사-공장 등 냄새 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음.</li> <li>당해 지구는 사업진행 중으로 주변도로, 공공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로, 선형공원 등 단지공사 및 건축공사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음.</li> <li>학교 배정 계획은 향후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람.</li> <li>견본주택 모형도의 단지 출입구 및 차량게이트 설치 위치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실제 설치 위치는 상이할 수 있음.</li> <li>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변경을 요하는 사항(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자재 선정 및 시공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계약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한 동의 및 승인에 대한 의무가 발생함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함.</li> <li>입주자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공급계약서, 각종 홍보물 등에 제시된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변경 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li> <li>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주택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에 관해서는 사업주체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li> <li>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하여 토목 또는 건축용벽, 난간, 사면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되고, 주변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축조 규모와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음.</li> <li>본 공사가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기간 및 흙막이 등의 가시설 공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정면적, 자연지반 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일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은 설계개선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위치 및 면적, 개소, 형태 등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추후 변경 될 수 있음.</li> <li>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약 및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파트 단지명,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옥상조형물, 등번호, 외벽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명칭</li> <li>2. 조정식체, 조정시설물, 수공간, 어린이놀이터, 육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포장, D/A(환기구), 배기관, 옥외 시설물 등의 디자인, 위치, 개소</li> <li>3.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li> </ol>
<p>도로 및 기반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 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 거리 등의 변경,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모형도 및 CG에 표현된 단지 외부시설 및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최종 인허가 및 실시계획에 따라 최종 설치될 예정이며,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에 따라 보행자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 경사도 및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li> <li>사업부지 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음.</li> <li>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 주차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아간조형 및 차량 전조등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li> <li>단지 외곽 일부 부위에 레벨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난간 등이 설치될 수 있음.</li> <li>단지 복층 연결녹지 및 단지 서측의 선형공원의 경사도 및 계획고가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 될 수 있음.</li> </ul>
<p>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람.</li> <li>당 단지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해당 기관의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 될 수 있으며, 학생 배정 계획 등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음.</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초등학교 : 고덕8초등학교(가칭) 임시배치 후 고덕14초등학교(가칭) 설립 시 재배치 예정          중학교 : 고덕중학군 내 배치(민세중학교, 해창중학교, 고덕9중학교(가칭) 등)          ※ 학군 내 학교설립 추진 상황, 학생수 증감, 교육정책 및 환경 변화 등으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계획에 따라 학생 배정학교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향후 공동주택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p> </div>
<p>분양 홍보물 (카탈로그, 각종 광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종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현황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변경)도면을 기준으로 표현하였음.</li> <li>인허가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줄눈, 옥탑 구조물, 조경, 사인물, 단지 시설물 등이 분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음.</li> <li>조감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외벽의 줄눈 형태 및 칼라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음.</li> <li>분양홍보에 사용된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현장여건,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li> <li>본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창호류, 가구류, 바닥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li> <li>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며, 대지 주변 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 기기 및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음.</li> <li>본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 가구(커튼, 침대, 소파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들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분양가 미포함)</li> <li>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공사 시 제조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li> </ul>

	<p>하드웨어는 상이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 내 설치되는 CCTV는 보안용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는 건본주택 소방 법령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므로 본 공사 시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설비는 인허가 기준에 따라 설치됨.</li> <li>• 일부 평면의 경우 건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 대비 평면이 좌우 대칭되어 시공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li> <li>• 건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발코니 확장 시 선택 가능한 옵션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 선택 시 건본주택 건립세대와 우물천장, 주방가구, 침실 불박이장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li> </ul>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조정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li> <li>• 현장운영 방침에 따라 일부 세대는 시공 개선 및 품질 관리를 위한 현장 내 건본세대로 이용될 수 있음.</li> <li>•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특화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분양계약체결 시 변경 수락 동의를 요청할 경우 수락해야 함.</li> <li>•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발코니 날개벽의 폭, 길이, 높이 등), 각종 출입구 등의 디자인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아파트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아파트, 지하주차장, 문주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경비실 등)의 기초구조형식은 추가 지반조사 또는 굴토 후 지내역 시험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li> </ul>

■ 단지 유의사항

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 전 사업부지 현황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등으로 인해 주변시설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 주변 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 등으로 조망권 및 일조권 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li> <li>• 주동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에 따라 분양 받을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 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각종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여 주동출입구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li> <li>• 각종별 엘리베이터 및 통출입구의 유무, 사이즈, 위치 등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음.</li> <li>• 발전기실 인접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차동 및 주기적 시험가동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차로 및 비상차로, 주차장 출입구, 단지 출입구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li> <li>• 저층부 세대는 문주, 주차출입구, 부대시설 가로등,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 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li> <li>• 각 경관에 해당하는 조명, 경관계획은 관할청의 규제사항에 저촉 또는 권고된 경우 계획이 변경 및 삭제될 수 있음.</li> <li>• 각 동 저층세대의 경우 단지 내외 도로와 도로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지내 조정식재, 조정시설물, 수경시설, 각종 외부조명 및 홈네트워킹 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르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li> <li>•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아파트 외벽에(동별 위치 상이) 벽부형 사인물 및 피뢰침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의 미관저하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li> <li>• 본 아파트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이동통신설비 안테나가 테크 주차장에만 계획되어 있으나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li> <li>• 단지내 설치되는 놀이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부대복리시설, 대지내 공지, 소방도로, 생활폐기물보관소, 보행가로변 자전거보관소 등에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로 및 패턴 디자인, 파라렛 높이, 몰딩, 창틀 모양, 줄눈 등), 지하 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 문주, 천창, 드라이에어리어(DA), 조정식재, 시설물, 재료 및 패턴 등의 포장계획 등)은 구조 및 심의, 디자인 의도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음.</li> <li>• 건물요철, 외벽몰딩, 장식물, 시설물, 조경 등에 의해 일부세대의 소음, 조망 및 일조가 침해될 수 있음.</li> <li>• 입주시 단지내도로,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몰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한이 있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li> <li>• 단지 내 CCTV 등의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법과 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li> <li>• 공용부 동파가 우려되는 구역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경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됨.</li> <li>•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외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장비(안테나, 중계기 등)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양호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 배관의 특성상 전파파해, 난시청 등으로 인하여 TV 및 라디오, DMB방송 일부 채널 수신에 불량 할 수 있음.</li> <li>• 엘리베이터는 층, 라인에 따라 속도, 인원, 층수, 대수 등이 상이할 수 있음.</li> <li>•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li> <li>• 단지 내 외부의 레일차 및 원할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단지 내로 진입하는 비상차량 동선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li> <li>•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와 인접한 세대는 빛공해 및 소음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주차입구 및 부출입구,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빛공해 및 소음공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저층의 경우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li> <li>• 계약 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등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 거리 등의 변경,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배차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건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li> <li>• 단지 내 동간 거리에 있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각 동 인접 동과의 시각적 간섭 발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음.</li> <li>• 공동주택의 특성 상 층간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각종 홍보물 등의 이미지 및 모형에 표시된 단지 내외부(인쇄물, 입면, 마감재, 조경, 측벽 그래픽, 사인, 기단부, 기타 외부사항 등)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공사 시 금조건설축의 현장별 디자인 기준에 따라서 변경되어 시공될 예정임.</li> <li>• 공사 중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필로티, 발코니, 창틀, 색채디자인) 디자인을 포함한 단지 내 난간의 디테일 및 높이,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음.</li> <li>• 건축계획 또는 조경계획의 변경분양 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 등으로 인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건축물의 외관 등의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음.</li> <li>•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 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시설물(수목, 시설물, 조경 시설, 포장, 기부채납 구간 등), 단지 레일 차에 따른 옹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li> <li>• 단지 외부시설 및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최종 인허가 및 실시계획에 따라 최종 설치될 예정이며,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일차에 따라 보행자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 경사도 및 지반레일(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li> <li>• 친환경 주택 인허가 지침사항에 따라 단지 주동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크기,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공부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놀이시설, 휴게 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li> <li>• 사업부지 면적, 대지면적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li> <li>•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야간조명 및 차량 전조등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일부 1층 세대의 경우 하층부(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실 및 헬룸, DA 등 부대복리시설로 인하여 소음, 진동, 냄새, 분진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 통행로의 경우 비상차량 및 이사차량, 입주자 차량 등의 운행에 따라 단지 내 도로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배치 계획을 필히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해야 함.</li> <li>• 단지 우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 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거나 단지 배치 특성 및 건물 높이에 따른 문제 등으로 사다리차(크레인) 사용이 불가한 세대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함.</li> <li>• 단지 내 조경, 동 행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이 불가함.</li> <li>•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li> <li>• 지하층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인접상가)의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li> <li>• 각 주동 주출입구 홀, 커뮤니티, 상가 지붕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li> <li>• 엘리베이터와 접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li> <li>•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자램프 위치, 점자 블록 위치개소 및 난간의 형태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아파트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재료, 디자인 등) 등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li> <li>• 옥상 난간 턱 높이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공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li> </ul>
공동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면 차별화 및 관계기관의 심의, 현장여건에 따라 옥탑, 지붕, 외벽, 동 출입구,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입면, 아파트 외벽 문양 등의 디자인 및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고, 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지하층 내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사공 됨.</li> <li>•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는 설비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은 천장배관에 의해 통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확인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li> <li>• 지하주차장 천장, 기둥 및 벽체 일부에는 각종 배관, 배선 등이 노출될 수 있음.</li> <li>•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될 수 있음.</li> <li>•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복욕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소음진동,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옥외공간에는 통기 배관 및 연도가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조망권, 소음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옥외공간에 수전 및 배수가 설치된 경우에는 겨울철 동파와 배수 막힘 현상 등의 방지를 위해 입주자의 유지관리가 필요함.</li> <li>• 옥외공간에는 우수 또는 배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일부 하부세대의 실내공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아파트 외관 구성 상 일부 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li> <li>• 아파트 옥탑층 및 중간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 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아파트 각 층 계단실 환기창의 설치위치는 1층~3층 사이 및 최상층에 각각 2개소가 설치됨에 따라 각 층별 환기 및 채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각 동 최상층의 승강로 피트내부에 엘리베이터 기계 구동부가 설치되므로 이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커버 등 설치물의 디자인 및 사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 및 비용에 대한 책임은 입주민에게 있음.</li> <li>•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음.</li> <li>• 인허가 관청의 인허가 조건(심의 및 인허가조건 등)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 도로 및 비상차량 동선 등), 조경수와 조경시설(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색채, 크기, 모양, 경계선형 등의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 지상 구조물(설비 환기용 급배기구, 천장, 주차장 환기구),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li> <li>• 주차장 및 아파트 PIT와 지하층 계단실, ELEV HALL 통행로에는 단열설계가 없으므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각 동별 지하PIT 내부에 설치되는 집수정 및 집수정의 펌프로 인하여, 펌프 작동 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여 인접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li> <li>• 본 건축물은 바닥에 층간소음 완충재가 시공될 예정이나,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본 사업 층간 소음재는 바닥충격을 경량1등급과 중량2등급 인정자재(자재시험성적서 기준)로 시공 예정이며, 실제 공사 후 시험 시 주변 환경에 따라 등급이 다르게 나올 수 있음.</li> <li>• 단지 여건에 따라 저층 세대는 일조가 불리할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li> <li>• 단지 내 도로의 폭, 선형 및 포장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시공 중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 출토 시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입주자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입주지연 발생 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지연 보상은 지급되지 않음.</li> <li>• 추후 소방서 점검 시 사다리차 전개에 문제가 되는 경우 일부 수목에 대해 상부 가지치기 또는 재배치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일부 세대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 중 샘플 세대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이는 공사상 수반되는 품질 향상을 위한 사유이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단지 인접 도로 개통 전, 단지와의 레벨 차이에 의해 옹벽이나 별도 구조물이 노출되어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입주 후 개통 시 공사에 의한 소음, 먼지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비상차량동선 및 정차구간, 공기안전매트 설치구간의 위치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기안전매트 설치 위치에는 수목 식재가 배제되며, 이에 따라 인접 저층부 세대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배치도의 대기경계선 구역경계선 범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관련 법규의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조경면적 및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li> <li>•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각종 인입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아파트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 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아파트 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아파트 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되거나 옹벽 또는 조경석이 추가, 조정될 수 있음.</li> <li>• 입주 후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입주민 자체적으로 관리해야하며, 이에 따라 관리비 등이 부과될 수 있음.</li> <li>• 단지 외 주변 단지, 완충층지, 도로 등의 면적 및 레벨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단지 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 주차입구 일부 구간 보차혼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니 계약 시 내용 확인하시고 사고 발생에 유의하시고, 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음.</li> <li>• 단지 내외 시설물(문주, 주차출입구, 경비실, 부대시설, 경관조명, 비조명, 태양광 패널등)에 의해 특정 세대가 눈부심 현상(빛반사, 자동차 전도동, 야간조명 등)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계약 시 시설의 위치 및 규모 등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람.</li> <li>• 최상층에 펜트하우스가 계획되어 있어 펜트하우스 발코니에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하부 세대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펜트하우스 세대는 일반세대와 마감재 및 가구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분양가가 상이할 수 있으나 이를 인지하고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ul>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포장 등 포함), 바닥포장, 저층부 외벽마감, 동 환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면적, 위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수량 등이 현장 시공 시 카탈로그 및 분양홍보물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 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고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li> <li>• 단지 내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li> <li>• 수목의 종류, 높이 및 굵기 등은 분양홍보물과 상이할 수 있음.</li> <li>•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에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 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li> <li>• 수경시설 사용에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사항임.</li> <li>• 단지에 설치되는 놀이터 내 놀이시설물 및 주민운동시설의 실외운동시설 등 조경시설은 자체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li> <li>•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 선형, 폭과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배기탑 등 구조물의 크기변경에 의해 조경면적 및 식재·시설물·포장계획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은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됨.</li> <li>• 조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li> <li>• 소방용 안전매트 구간에는 교육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ul>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주 형태, 높이, 폭,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 계획 및 외관개선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 주차출입구 문주로 인하여 인접한 저층 세대는 조망, 일조가 간섭될 수 있음.</li> <li>• 문주는 주차출입구에 1개소 설치됨.</li> </ul>
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헬륨, 배기탑 및 제연헬륨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음.</li> <li>• 법정수위에 맞춰 단지 내 자연거보관소가 설치되며 저층 일부 세대는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각 동별로 자연거보관소의 위치나 개수는 상이하며, 디자인 및 위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li> <li>• 각 동 지하층에 제연헬륨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상층에 제연급기용 그릴이 설치 됨.</li> <li>• 추동 주변 또는 추동과 접하여 생활폐기물보관소, 드라이에어리어(DA), 천장,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등이 설치되어 미관저해,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바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람.</li> <li>• 무인택배함은 동별 1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현장 여건 상 추후 위치 및 개소는 변경 될 수 있음.</li> <li>• 준공 후 하자보수를 위한 자재를 공용공간에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적치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li> <li>• 계절창고 캐비닛의 개수는 전체 세대수의 20% 수준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각 동의 계절창고 개소 및 설치 개수가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음. 현장 여건 상 추후 위치 및 개소는 변경 될 수 있음.</li> <li>• 배치도 상에 표현된 지상 헬륨, 배기탑 및 제연헬륨 DA(드라이에어리어) 등의 돌출물의 크기 및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생활폐기물보관소 및 재활용품 보관창고 인접 세대에는 시선 간섭,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li> </ul>
시설물		

<p>부대 복리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피트니스센터, 돌봄센터, 키즈스테이션 등)의 옥상 및 주변에는 에어컨실외기, 태양광패널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열기, 빛반사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각종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본 공사 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어린이놀이터, 조경공간 등 인근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어린이집 및 경로당은 지상 1층에 계획되어 있어 인근 저층부 세대에서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동측 위치하고 있으며 추후 상가 분양 이후 평면,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부대복리시설 및 일부 공용부(지하주차장 및 아파트 PIT 등)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관리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에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커뮤니티 운영 및 관리 주체는 입주자대표회 및 관리사무소이며, 이에 따라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음.</li> <li>• 단지 서측에 일부 부대복리시설(게스트하우스, 캠퍼서센터, 힐링센터, 파티룸, 웰컴라운지, 창작스튜디오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저층부 세대에 층간 소음 및 진동,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본 아파트 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2, 「공공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3,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된 위탁제 포함)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li> <li>•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2에 따라 평택시청이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관청인 평택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 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li> </ul>																																																				
<p>주차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단지의 주차장 설치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li> </ul> <table border="1" data-bbox="292 640 1457 775"> <thead> <tr> <th rowspan="3">총 주차대수 (세대당)</th> <th rowspan="3">구분</th> <th colspan="6">아파트</th> <th colspan="6">근린생활시설</th> </tr> <tr> <th colspan="3">지상주차장</th> <th colspan="3">지하주차장</th> <th colspan="3">지상주차장</th> <th colspan="3">지하주차장</th> </tr> <tr> <th>일반</th> <th>장애인</th> <th>전기차</th> <th>일반</th> <th>장애인</th> <th>전기차</th> <th>일반</th> <th>장애인</th> <th>전기차</th> <th>일반</th> <th>장애인</th> <th>전기차</th> </tr> </thead> <tbody> <tr> <td>810대 (1.28대)</td> <td>계</td> <td>-</td> <td>-</td> <td>-</td> <td>742대</td> <td>25대</td> <td>41대</td> <td>2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및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위치는 각 동별로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주차구획 위치 및 주차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li> <li>* 본 단지에 설치 예정인 전기차 충전기 41대 중 9대는 급속충전기, 32대는 완속충전기로 계획되어 있음</li> <li>•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 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아파트 지하층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 부족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배선 및 배관, 환기장치(유도팬)가 노출되어 있음.</li> <li>• 공동주택 주차대수는 지하 808대이며, 25대는 장애인 주차장임(주차장은 동별로 상이함)</li> <li>• 근린생활시설(상가)은 별도로 2대가 지상주차장으로 설계되어 있음</li> <li>• 지하주차장 상부 및 벽체 일부에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li> <li>• 구조 형식상 지하층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 및 채광창, 채광용 폴리카보네이트 등은 본 시공 시 디자인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 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치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되었으므로, 향후 관련법 개정 및 개인/단체에 의한 추가요구가 불가능함)</li> <li>• 지하주차장에 급속충전기 9대, 완속충전기 32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현장 여건 상 추후 위치 및 개소는 변경 될 수 있으며 각 동으로부터의 접근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음. 주차장의 위치나 구조에 따라 배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li> <li>•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는 설비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은 천장배관에 의해 통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확인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li> <li>•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각 동별 지하PIT 내부에 설치되는 집수정 및 집수정의 펌프로 인하여, 펌프 작동 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여 인접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li> <li>• 구조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 진입 램프엔 집중호우를 대비한 차수판이 계획되어 있으며, 집중호우 발생시 차수판 설치로 인해 지하주차장 진출입이 어려울 수 있음.</li> </ul>	총 주차대수 (세대당)	구분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일반	장애인	전기차	일반	장애인	전기차	일반	장애인	전기차	일반	장애인	전기차	810대 (1.28대)	계	-	-	-	742대	25대	41대	2대	-	-	-	-	-
총 주차대수 (세대당)	구분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일반	장애인	전기차	일반	장애인	전기차	일반	장애인	전기차	일반	장애인	전기차																																								
810대 (1.28대)	계	-	-	-	742대	25대	41대	2대	-	-	-	-	-																																								
<p>시스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설비가 설치되며, 일부동/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축리용 피뢰침이 시공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단지 내 CCTV,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법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시스템 설치에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단지 내 설치되는 CCTV는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 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li> <li>• 지상층에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용 구조물과 천창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태양광 발전설비의 위치, 각도, 방향, 수량, 배치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모형과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음.</li> </ul>																																																				

■ 세대 유의사항

<p>세대 공동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고는 2.3M(1층세대는 2.4M)이며, 실시공사 법정 허용한도 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세대 내부가구, 주방기구, 불박이장, 수납가구 등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li> <li>• 건본주택의 월패드, 스위치, 조명기구,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등의 위치 및 제조사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주동 코어 형태에 따라 일부 세대는 엘리베이터 작동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li> <li>•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주방상부 가스배관 타공 등)의 종류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은 세대별로 상이하고 위치, 수량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거실(스텐딩)과 침실(벽걸이)에어컨 설치를 위한 냉매매립배관이 실외기실까지 설치되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설치되지 않음. 기본 시공되는 실 외에 별도 실내기와 실외기 설치 시 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며, 사용상의 불편 및 실외기의 열기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li> <li>• 본 아파트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열원을 사용한 중앙 공급 방식이 적용됨.</li> <li>• 현관, 발코니의 경우 비난방공간 임.(욕실은 욕조, 샤워부스, 양변기, 세면기 하부 공간은 바닥 난방 시공 제외)</li> <li>• 단원세대의 드레스룸, 욕실에 바닥 난방이 적용되며, 별도의 난방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접 침실에서 통합 제어됨.</li> <li>•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li> <li>• 각실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 품목(콘센트, 조명기구)의 사양 및 설치위치 등이 변경 될 수 있음.</li> <li>• 세대 내 실내환기는 전열교환 환기방식으로 기계환기 설비가 적용되어 있으며, 실외기실 천장 혹은 발코니 천장에 전열교환기 및 덕트가 노출 설치되고,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음.</li> <li>• 일반 냉장과 설치 시(빌트인 냉장과 옵션 미선택시) 주방기구보다 냉장과 전면이 돌출될 수 있음.</li> <li>•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의 위치는 관련규정에 의거 침실벽 등 노출된 부위에 설치될 예정이며, 공사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중 일부를 사용할 수 없음.</li> <li>• 홈네트워크 서비스는 별도의 IP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휴대폰 제에서는 통신요금에 발생할 수 있음.</li> <li>•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등)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음.</li> <li>• 전 타입의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 설치)에는 물건을 적재할 수 없으며, 물건 적재시 피난활동에 방해유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피난공간(하향식피난구)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향후 비상상황 발생 시 장애물의 설치로 인한 계약자의 피해에 대해 시공사 및 사업주체는 책임이 없음.</li> <li>• 침실1 앞 실외기실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세대당 1개소 설치(위아래층 교차 시공)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지상1층 제외). 단, 필로티 상부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아닌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거실용 에어컨 냉매배스는 플라스틱 마감기바로 설치될 예정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냉매배스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방 및 욕실배기는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각 세대의 외벽에 배기구가 설치됨.</li> <li>• 세대 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내시경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li> <li>• 환기디퓨저, 가스배관 및 개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제어부 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li> <li>• 옵션에 따라 난방조절 가스, 위치, 수량 등은 상이할 수 있음.</li> <li>• 세대 욕실 천장에 설비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크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세대 욕실 천장에 상부세대의 급수, 급탕배관용 분배기박스가 설치되어 상부세대의 누수상황 발생시 점검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후드 상부장치는 주방자동소화장치기 설치되며, 후드 상부장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없음.</li> <li>• 세대 내 동체감지기가 설치 됨.(아파트1~2층 및 최상층의 경우는 발코니 및 거실등에 설치되며, 기타층은 거실에만 설치됨)</li> <l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흡선 선택에 따른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음.</li> <li>• 홍보물등에 명시한 IoT, 홈네트워크 관련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일부 서비스의 변경 또는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전시공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li> <li>• 각실 선택형에 따라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설치 방향 및 수량 등이 상이 할 수 있음.</li> <li>• 세대 내 조명기구는 실시간 시 견본주택에 구현된 제품의 위치 및 색 등이 상이 할 수 있음.</li> <li>• 기본제공형 욕실환풍기와 유상흡선 복합 환풍기의 설치위치는 기능상 이유로 설치위치가 상이 할 수 있음.</li> </ul>
<p>창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 창호 색상,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풍동실험, 풍압검토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 될 수 있음.</li> <li>•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세대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본 공사 시 외부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손잡이,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등은 구조 검토 결과 또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li> <li>• 세대 현관방화문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ul>
<p>단위세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상의 단위세대와 대칭형으로 시공되는 세대가 있으니 계약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타입별 동호수 위치는 분양 카탈로그를 참고)</li> <li>•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나 위치변경은 불가함.</li> <li>•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함.</li> <li>• 평형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오니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li> <li>• 각 평형별 유상흡선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li> <li>• 추동 저층부 차폐화마감 적용 시, 별도마감적용부위의 세대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와 색상이 마감을 위해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마감이 노출될 수 있음.</li> <li>•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안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티프닝스기 및 물결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의 우려가 있음.</li> <li>• 각 주택형별로 서비스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서비스면적에 따른 분양가 차이는 사업주체가 임의조정할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세대 내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음.</li> <li>• 세대 내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덕트/PIT 공간은 임의로 벽체를 철거하여 불법으로 확장할 수 없음.</li> <li>• 「실내건축의 구조시공에 관한 기준」 제8조제2항제4호에 의거하여 침실 및 욕실 문에는 손 끼임 방지 장치가 시공되며, 본 공사 시 장치의 디자인 및 재질 등 상세 사양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li> <li>• 세대 내 창호 타입의 경우, 분양 홍보물 대비 일부 각 실의 향,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동호수, 세대 배치, 코아 형태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li> <li>• 본공사 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우물천장, 커튼박스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li> </ul>
<p>마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가 사용될 경우, 자체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미사용시 해당 없음).</li> <li>• 천연석이 사용될 경우,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배인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 할 수 있음.</li> <li>• 엔지니어드스톤(현관디딤판, 화장대상판, 욕실뒷선반 등)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음. 또한, 재료의 접합연결부가 발생하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li> <li>• 주방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 시 연결부위가 발생(세대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음)되며, 제품 특성상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욕실 및 세탁실 문턱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 없음.(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li> <li>• 세대내부 욕실 및 발코니의 바닥단차는 바닥구배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세대 내 설치되는 자재 및 제품(주방 및 일반가구, 시스템선반, 현관방화문, 마루, 타일 등)은 본 공사 시 업체선정 결과에 따라 제조사 및 시공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재 특성상 또는 제조사 및 제조시기 등의 차이로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li> <li>• 외벽 및 세대간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음.</li> <li>•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직접 경량벽체에 고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li> <li>• 거실 우물 천장 및 각실의 커튼박스의 크기는 스프링클러 및 환기 배관 등의 설치로 인해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거실 아트월은 오픈출근으로 시공 됨.</li> <li>•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공사 시 하자발생 방지를 위해 PVC 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 될 수 있음.</li> <li>• 가구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거울 등)의 벽, 바닥, 천장등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마감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세대 내 천장물딩은 하자예방 및 시공성향상을 위해 도배홈이 설치되며 견본주택과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음.</li> <li>• 욕실 벽 및 바닥, 현관벽, 주방 벽, 발코니 바닥 등의 타일나누기는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 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자재(타사자재 포함)로 변경될 수 있음.</li> <li>•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코킹의 위치 및 색상이 견본 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li> </ul>
<p>유상흡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무상흡선 선택결과에 따라, 견본주택에 전시되지 않은 마감재로 해당 세대가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감재 차이로 인해 실제 입주 시 느끼는 분위기, 마감색상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li> <li>•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에어컨 냉매매립배관박스와 전원콘센트는 침실1(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만 기본으로 설치되며,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는 입주자 부담이며 위치이동, 추가 설치 등의 계약자의 요구는 적용이 불가함.</li> <li>• 시스템에어컨은 옵션 계약기간 내에서만 계약이 가능함.</li> <li>•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li> <li>•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시스템에어컨에 의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 될 수 있음.</li> <li>•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li> <li>• 시스템에어컨 및 각종 가전 옵션선택 시 입주 이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li> <li>• 시스템에어컨은 일반형(프리미엄 2가지 제품)으로 판매하며, 제품별 실내기 커버의 모양이 상이함을 인지하여 계약 하시기 바람.</li> <li>• 옵션 선택으로 설치되는 면적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li> <li>• 유상흡선 품목 선택 이후 제품 특성상 시장 판매가가 감액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한 차액이나, 감액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대한 책임 없음.</li> <li>• 현관중문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현관중문 미설치 시 벽체가 추가 설치되며 신발장 깊이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옵션선택품목 중 원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발생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됨.</li> <li>• 빌트인 냉장고는 배치 순서, 문열림 방향, 도어 마감 재질 및 색상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음.</li> <li>• 마감시양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입주시 제조사의 사정으로 단종될 경우 대체 모델이 설치됨.</li> <li>• 식기세척기는 전면 가구판 마감이 설치됨.</li> <li>• 주방패키지 또는 전기쿡탑(인덕션) 옵션 선택 시 가스 배관은 가스 계량기가 설치된 장소까지 제공되고 주방용 가스배관은 미설치되고 이 경우 가스 쿡탑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나 유의하시기 바람 옵션 비용은 해당 금액이 반영된 금액임.</li> <li>• 주방패키지 선택시 전기쿡탑(인덕션) 선택은 필수 조건임</li> <li>• 천장형 제습기용 배수 드레인인 시스템에어컨/냉매배관 드레인에 혼용하여 배수처리 예정이며, 일부 타입은 여건상 인근 욕실에 배수 드레인 처리 될 수 있음.</li> <li>• 일부 세대는 유상흡선 선택결과에 따라 복합환풍기의 일부 기능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하시기 바람.</li> </ul>

**6.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고,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구 분		총 액	
택지비(4)	택지공급가격(1)	112,453,347	
	기간이자(2)	4,434,475	
	필요적 경비(3)	107,336	
	그 밖의 비용(4)	-	
	계	116,995,158	
공사비(51)	토목(13)	토공사(5)	8,226,933
		흙막이공사(6)	-
		비탈면보호공사(7)	-
		옹벽공사(8)	1,375,969
		석축공사(9)	-
		우수·오수공사(10)	2,178,617
		공동구공사(11)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12)	-
		도로포장공사(13)	2,178,621
		교통안전시설물공사(14)	-
		정화조시설공사(15)	-
		조경공사(16)	11,213,978
		부대시설공사(17)	-
		계	25,174,118
	건축(23)	공통가설공사(18)	4,437,314
		가시설물공사(19)	1,384,328
		지정 및 기초공사(20)	3,175,743
철골공사(21)		-	
철근콘크리트공사(22)		46,650,852	
용접공사(23)		-	
조적공사(24)		2,325,783	
미장공사(25)		2,400,880	
단열공사(26)		-	
방수·방습공사(27)		1,663,438	
목공사(28)		2,923,979	
가구공사(29)		1,443,700	
금속공사(30)		736,191	
지붕 및 환통공사(31)		225,390	
창호공사(32)		4,293,285	
유리공사(33)		1,350,186	
타일공사(34)		2,397,820	
돌공사(35)		261,671	
도장공사(36)		1,377,526	
도배공사(37)		777,247	
수장공사(38)	1,381,771		
주방용구공사(39)	962,469		
그 밖의 건축공사(40)	7,551,875		
	계	87,721,448	
기계설비(9)	급수설비공사(41)	4,474,190	
	급탕설비공사(42)	3,914,916	
	오수·배수설비공사(43)	4,030,303	
	위생기구설비공사(44)	1,934,106	
	난방설비공사(45)	823,692	
	가스설비공사(46)	322,036	
	자동제어설비공사(47)	53,610	
	특수설비공사(48)	-	
	공조설비공사(49)	-	
	계	15,552,855	
그 밖의 공중(4)	전기설비공사(50)	12,825,899	
	정보통신공사(51)	9,617,114	
	소방설비공사(52)	8,024,738	
	승강기공사(53)	1,058,423	
	계	31,526,174	
그 밖의 공사비(2)	일반관리비(54)	6,085,626	
	이윤(55)	-	
	계	6,085,626	
간접비(6)	설계비(56)	2,178,815	
	감리비(57)	1,499,773	
	일반분양시설경비(58)	1,692,308	
	분담금 및 부담금(59)	-	
	보상비(60)	-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61)	1,951,004	
	계	7,321,900	
그 밖의 비용(1)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62)	27,801,082	
	합계	318,178,360	

-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감정평가금액(산술평균액)	가. 나라감정평가법인	나. 제일감정평가법인
120,113,380	120,990,120	119,236,640

### 7.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사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 목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															
	계	기간 이자	기타 비용	계	법정 초과 조경특화	입면 마감 특화	법정 초과 복리시설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친환경 주택 건설 추가 비용	지하 주차장 증고 증가	인증 설계 추가 비용	감리비 추가 비용	기초지반공사비			안전 관리비	전기차 충전 시설
								홈 네트워크	에어컨 냉매 배관	기계 환기 설비					말뚝 박기 공사비	임석 지반 공사비	흙막이 및 추수벽 공사비		
금 액	4,851,187	4,736,540	114,648	29,694,821	3,427,856	2,673,248	2,010,026	4,503,736	888,333	1,675,193	2,383,437	697,706	279,268	5,536,454	4,327,945	539,118	186,044	291,300	275,157

### 8.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구분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열저항하게 기준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름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미적용	지역난방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산업동작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에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 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 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비(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라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성능등급 표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p><b>녹색건축 예비 인증서</b></p> <p>인증번호 : G-SEED-2025-1130-10 인증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효기간 : 사용승인(사용권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p> <p>인증등급 : 일반(그린4등급)</p> <p>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p> <p>인증대상 : 공동주택</p> <p>인증번호 : 2025-06-30 평가도 평가서 : 평가도평가서 제2025-06-30-A-03B</p> <p>총 수 : 지하 1층, 지상 27층</p> <p>연 면 적 : 95,928.09㎡ (630세대)</p> <p>건축물의주요 용도 : 공동주택</p> <p>설 계 자 : ㈜강남종합건설(주)사우스</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 일반(그린4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녹색건축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2025년 11월 28일</p>	<p><b>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b></p> <p>1. 공동주택명: 평택고덕 A-63BL 통합형 민간형의 공동주택 2. 신 설 계: 구조건설(신수) 3. 대 지 위 치: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249길10번지A-63BL 4. 양 용 등급</p> <p>4. 구분 관련 등급</p> <p>1. 내구성: ★★★★★ 2. 가용성: ★★★★★ 3. 수리유지성: ★★★★★ 4. 수리비용: ★★★★★</p> <p>다. 환경 관련 등급</p> <p>1. 내구성: ★★★★★ 2. 가용성: ★★★★★ 3. 수리유지성: ★★★★★ 4. 수리비용: ★★★★★</p> <p>다. 환경 관련 등급</p> <p>1. 내구성: ★★★★★ 2. 가용성: ★★★★★ 3. 수리유지성: ★★★★★ 4. 수리비용: ★★★★★</p> <p>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2025년 11월 28일</p>	<p><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b></p> <p>인증번호 : 2025-06-111-0265 평가도 : 4.00분 인증기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대상 : 공동주택</p> <p>인증등급 : 일반(그린4등급)</p> <p>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p> <p>인증번호 : 2025-06-30 평가도 평가서 : 평가도평가서 제2025-06-30-A-03B</p> <p>총 수 : 지하 1층, 지상 27층</p> <p>연 면 적 : 95,928.09㎡ (630세대)</p> <p>건축물의주요 용도 : 공동주택</p> <p>인증번호 : 2025-06-30 평가도 평가서 : 평가도평가서 제2025-06-30-A-03B</p> <p>위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64조제1항에 의해 「주택법」 제39조제1항 제4호 제1호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2025년 11월 21일</p>

※ 본 공고문에 포함된 인증서는 예비인증서로, 각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 여건 및 본인증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9.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블록	건설(건축, 기계, 토목, 조경, 통신, 소방)	전기
상호	주식회사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213-81-54324) 주식회사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220-81-03987)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테크뱅크(752-86-00309) 주식회사 지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595-87-02147)	주식회사 지성설계컨설팅(105-86-35619)
계약금액	7,149,025,000원	572,661,360원

## 10.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 사업주체 현황

구분	공공시행자	민간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금호건설(주)	우미건설(주)	신동아건설(주)	(주)신흥디앤씨
사업자등록번호	135-82-14276	104-81-31309	409-81-31276	106-81-33808	504-81-46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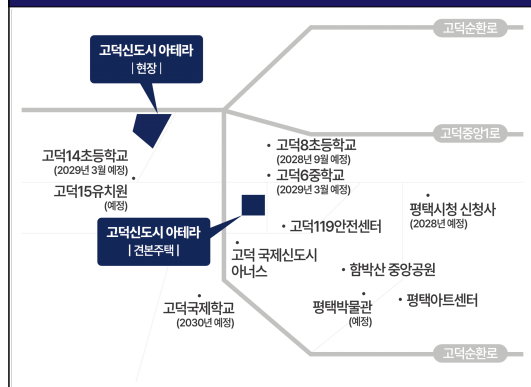
※ 본 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제2항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사업자(금호건설(주), 우미건설(주), 신동아건설(주), (주)신흥디앤씨)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이며, 분양주체는 금호건설(주)입니다.

### ■ 시공사

구분	시공사			
	금호건설(주)	우미건설(주)	신동아건설(주)	(주)신흥디앤씨
사업자등록번호	104-81-31309	409-81-31276	106-81-33808	504-81-46827

## 11.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63블록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 **위치안내**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산 510-97번지  
 ※ 견본주택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길** : 고덕 119안전센터 맞은편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 버스노선 : 일반 1452번 버스(고덕아너스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 **운영기간** : 견본주택 오픈일부턴 분양 완료 시까지  
 ※ 당첨자 서류접수 및 현장계약 체결 등 일부기간 일반고객 관람 제한  
 ※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운영 변동 가능
- **운영시간** : 2026.04.24.(금)부터 분양완료 시까지 10:00~17:00  
 ※ 운영기간 내 주말, 공휴일 방문 가능

#### 홈페이지 (PC · 모바일)

#### 분양문의

■ 주 소 : <https://www.arteragd.co.kr>

■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 1833-6301 (10:00 ~ 17:00)